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55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흥국생명보험㈜
임 원	-
직 원	-

2. 조치내용

○ **(금감원 원안)**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1조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7,200만원 부과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3조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면제

○ **(수정의결)**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1조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1억원을 부과

제재대상	금전제재	
	원안	수정안
흥국생명보험㈜	과태료 7,200만원 부과 및 과징금 부과 면제	과태료 1억원 부과 및 과징금 부과 면제

3. 조치이유

가.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

(1) 프로그램 통제의무 위반('프로그램 테스트 불철저')

□ 금융회사는 전산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

하는 경우 ①기밀성·②무결성·③가용성을 고려한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

* ① 프로그램 적용 시 처리하는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, ② 정확하고 완전한 형태로, ③ 사용이 요구될 때 지정된 기능을 적시에 수행

◦ 회사는 20xx. xx. xx. ~ 20xx. xx. xx. 기간 중 프로그램 개발·변경 과정에서 기밀성·무결성·가용성 테스트를 미흡하게 실시하여 ●건의 전산오류가 발생하여 보험료 과다출금, 보험금 청구지연, 로그인 접속장애 등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

(2) 일괄작업 통제의무 위반('책임자 확인·승인절차 위반')

□ 금융회사는 일괄작업 수행 시 작업요청서에 의한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고, 오류 발생 시 반드시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

◦ 회사는 20xx. xx. xx. ~ 20xx. xx. xx. 기간 중 보험료 산출 및 자동이체 관련 일괄작업 과정에서 책임자 승인·확인 절차를 누락하여 ●건의 전산오류가 발생하였고, 이로 인해 보험료 과다출금, 보험료 납입지연 등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

(3) 전산자료 보호대책 운용 불철저

□ 금융회사는 자료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 테스트 작업 시 이용자 정보의 사용을 금지하고,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해야 하는데도

◦ 회사는 20xx. xx. xx. ~ 20xx. xx. xx. 기간 중 전산 프로그램 검증·개발 목적의 테스트를 실시하면서 DB에 보관 중인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변환하지 않고 사용한 사실이 있음

나.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등

(1)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·이용

□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또는 신용정보주체가 동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는데도

◦ 흥국생명보험㈜ 소속 직원 ●명은 20xx. xx. xx. ~ 20xx. xx. xx. 기간 중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회사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의 개인신용정보*(●건)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외로 부당**하게 조회·이용하였음

* 고객명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, 가입상품명, 계약번호, 계약체결일, 보험료 등

** 검사 결과 민원처리, 업무개선 등을 위해 조회했다고 주장하나 ❶해당 직원들은 민원처리 등 고객 관련 업무담당이 아니었고, ❷ 당사자 소명 내용상 개별 계약을 조회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 조회·이용으로 판단

4. 근거법규

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71조 제7호, 제98조 제2항 제10호, 제108조 제9호

○ 「(舊)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57조 제6항

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8조 제5항 제1의2호 및 제14호, 제99조 제4항 제2호 및 제7호, 제109조 제3항 제10호

○ 「(舊)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0조 제3항 제3호